

심사 규정

제정 : 2018. 7. 1.

개정 : 2019. 1.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 방위사업연구소 (이하 연구소라 함) 규정 제7장 제25조 학술지 발행 규정에 따라 본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선진국방연구(Journal of Advances in Military Studies: JAMS)(이하 학회지)에 대한 투고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학회지에 게재를 희망하여 논문을 투고한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심사위원 구성 및 선정

제3조(심사방식)

- (1) 본 학회지의 모든 논문심사는 저자정보를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에게 공개하지 않는 이중맹검 동료 심사(Double-Blinded peer review)를 원칙으로 진행한다.
- (2) 예비심사: 논문 투고 후, 투고논문의 적격성(학회지의 목적과 원고유형(투고 규정 제2장3조)에 부합 여부를 본심사 전에 필요 시 심사기준을 토대로 2명 이상의 편집위원을 배정하여 심사진행 여부 결정에 대해 평가
- (3) 본심사: 예비심사 후,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주제 및 연구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분과 편집위원을 선정하고 해당 분과 편집위원을 통해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을 추천받아 심사 진행

제4조(심사위원 구성) 편집위원장 및 분과 편집위원이 2명 이상을 추천받아 심사의뢰를 요청하여 모든 심사를 2인 이상으로 다음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 (1) 원칙적으로 외부 심사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단, 편집위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 (2) 외부 심사위원은 다음 각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 1) 연구소 회원 명부에 기재된 세부 전공분야(심사분야)가 심사대상 논문의 연구분야와 동일한 회원
 - 2) 심사대상 논문과 동일 또는 관련 분야의 논문을 게재 또는 발표한 연구자
 - 3) 심사대상 논문에서 인용된 논문의 저자
 - 4)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심사위원은 배제한다.

제3장 심사절차

제5조(심사절차)

(1) 논문의 접수와 예비심사

- 1) 모든 논문접수는 수시 접수 및 수시접수를 원칙으로 온라인 투고·심사시스템을 통해 진행한다 (<https://journal.idap.re.kr/index.php/JAMS/about/submissions>).
-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안내를 발행일로부터 2개월 전에 사전공고하며, 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 색인 및 학술지(<https://journal.idap.re.kr>) 및 방위사업연구소 홈페이지(<https://idap.re.kr>)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한다.
- 3)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확인하여, 연구분야 및 방법별로 분류하고 학회지의 목적과 연구범위에 대한 적격성을 판단하여 각 분과 편집위원에게 심사단계 진행을 요청한다.
 1. 예비 적격성 심사는 본 학회지의 목적과 연구범위에 부합하는 논문 여부 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진행한다. 편집위원 2인 이상을 선정하여 예비 심사를 진행하여 본심사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2. 본심사는 분과 편집위원을 배정하고 심사위원 2인 이상을 추천하여 심사의뢰 과정을 진행하도록 요청한다. 단, 분과 편집위원은 연구의 전문성 부분에게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편집위원장에게 분과 편집위원에 대한 재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심사의뢰 및 논문의 발송

- 1) 분과 편집위원이 주관하여 1주일 이내에 온라인 투고시스템을 통해 E-mail로 심사위원에게 심사의뢰를 요청하여 배정한다.
- 2) 심사대상 논문에서 저자의 소속과 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여 삭제 또는 재투고를 편집위원장에게 요청한다.

(3) 심사의견 및 심사결정 제출

- 1) 심사위원의 심사기간은 제 1차 심사의 경우에 3주일 이내(20일 내외), 재심사 이상의 경우에 1주일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심사위원은 심사결과가 「① 게재가능」 또는 「④ 게재거절」인 경우에도 심사보고서에 '심사기준' 항목에 따라 해당 심사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내용을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4) 심사결과의 통보

- 1) 분과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및 심사결정이 완료 후, 투고자에게 심사의견 전달여부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심사단계 진행과정을 점검하고 초기 정해진 심사기간 초과 시 심사위원에게 신속한 제출을 요청하여 전체 심사진행이 지체되지 않도록 한다.
- 2) 심사진행 및 결과통보는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한다.

(5) 투고자의 답변서 및 수정본 송부

- 1) 심사결과에 대한 답변서와 수정본은 심사위원 전원의 수정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2) 심사위원의 수정요청사항에 대한 답변서는 심사위원 각각에 대해 작성하여야 한다.
- 3) 답변서 및 수정본의 제출은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한다.

(6) 학술지 게재

- 1)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확정일자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발행되는 「선진국방연구」에 게재하며, 게재순서는 확정일자 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가장 가까운 시기에 게재될 논문들이 모두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호로 순연한다.
- 3)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중요성과 시급성, 그리고 연구주제의 공통성 등을 감안하여 1), 2)의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장 심사방법 및 최종판정 기준

제6조(심사방법) 심사는 각 심사위원의 세부 심사항목 평가(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와 최종결정으로 진행되며 **심사항목 평가**와 **최종결정**을 통합하여 심사에 대한 종합판정이 결정된다.

(1) 심사항목 평가

1) 심사규정의 심사항목(제4장7조)을 기준으로 투고규정의 원고 구성 및 작성지침(제3장8조)에 명시된 본문(서론, 문헌고찰, 연구방법, 연구결과, 연구 시사점), 초록 등에 대해 투고논문의 학술적 발전과 연구 성과물의 가치 확산 차원에서 항목별 심사의견(수정·보완)을 제시하는 정성적 평가를 진행한다.

1. 서론(Introduction): 연구배경과 목적 간의 연관성, 연구 중요성 제시
2. 문헌고찰(Literature Review): Key paper 고찰 여부, 최근 연구동향 검토
3. 연구방법(Methods): 연구목적을 검증하기 위해 적합한 연구절차 고려(타당성, 신뢰성 확보)
4. 연구결과/통계(Results): 분석결과에 대한 정확한 수치 제시, 통계값에 대한 세부설명
5. 연구 시사점(Implication): 학문적 시사점, 실무적 활용 시사점 제시 여부
6. 투고규정에 따른 원고형식 준수(Formating): 국문영문 초록, 참고문헌 형식, 목차 구성

2) 심사항목별로 연구논문의 중요성·창의성·타당성·완결성·적절성 등에 대해 항목별 개별 점수를 부여하는 정량적 평가를 진행한다.

(2) 최종결정(final decision)은 (1) 심사항목 평가를 토대로 게재 또는 추가 심사여부에 대한 결정으로 총 4단계(게재가능-수정 후 게재-수정 후 재심-게재거절)와 예비 적격성 심사로 판정한다.

제7조(심사위원의 심사항목 평가) 다음 심사항목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한다.

(1) 정성적 평가: 심사위원의 의견 제시

- 1) 서론(Introduction): 연구배경과 목적 간의 연관성, 연구 중요성 제시
- 2) 문헌고찰(Literature Review): Key paper 고찰 여부, 최근 연구동향 검토
- 3) 연구방법(Methods): 연구목적을 검증하기 위해 적합한 연구절차 고려(타당성, 신뢰성 확보)
- 4) 연구결과/통계(Results): 분석결과에 대한 정확한 수치 제시, 통계값에 대한 세부설명
- 5) 연구 시사점(Implication): 학문적 시사점, 실무적 활용 시사점 제시 여부
- 6) 투고규정에 따른 원고형식 준수(Formating): 국문영문 초록, 참고문헌 형식, 목차 구성
- 7) 심사총평 및 수정요청사항은 1) ~ 6) 항목별로 수정·보완할 사항을 기재한다.

(2) 정량적 평가: 심사위원의 심사항목 점수 부여

<평가 점수표> 평가 점수 부여(0-4점)

심사항목	매우미흡 Inadequate	미흡 Weak	보통 Modest	우수 Strong	매우우수 Very Strong
연구주제의 중요성					
연구내용의 창의성과 전문성					
연구내용의 이론적·실무적·정책적 기여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결과 및 논의 적절성					
선진국방연구 간행목적 부합					

주. 매우미흡(0점)-미흡(1점)-보통(2점)-우수(3점)-매우우수(4점)

제8조(심사위원의 최종결정) 심사위원은 심사항목(제7조)을 토대로 심사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린다.

(1) 심사결과는 다음 5단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결정한다.

- ① 게재가능: 편집위원/위원장 수정확인 후 게재처리
- ② 수정 후 게재: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수정반영 후, 심사위원의 추가 심사 후 게재 가능
- ③ 수정 후 재심: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수정반영 후, 재투고를 통해 재심사 진행
- ④ 게재거절
- ⑤ 예비 적격성 부적합

(2) 예비 적격성 심사

- 1) 예비 적격성 적합: 편집위원 2이 심사항목에 대해 평가하여 적합 판단
- 2) 예비 적격성 부적합: 투고논문의 적격성(학회지의 목적과 원고유형(논문 투고 규정 제2장4조)기준에 부적합(예비 적격성 적합 시, ① ~ ② 단계에서 결정)
 - 1. 학회지 논문 게재율 산출 시, ④게재거절 논문으로 처리하며, 예비 적격성 부적합 결정이 높을 경우에 편집위원회 회의를 통해 적격성 기준을 재검토 및 투고 지침에 대한 설명에 명기한다.

	심사결정(국문)	심사결정(영문)	심사결정 해석	최종 심사결정 처리
①	게재가능	Accept Submission	무수정 또는 수정확인 후 게재가능	편집위원/편집위원장
②	수정 후 게재	Revision Required	저자의 심사내용 반영 후 추가심사 (2차, 3차) 평가 후, 게재가능 결정	심사위원
③	수정 후 재심	Resubmit for Review	저자의 심사내용 반영 및 재투고 후, 심사단계 진행 여부 결정	기존 심사위원 유지 (필요시, 재배정)
④	게재거절	Decline Submission	다음 심사단계 진행 없이 종료	

⑤	예비 적격성 부적합	Resubmit elsewhere	심사위원(편집위원 구성) 적격성 기준 미충족	편집위원(2명 이상)
---	------------	--------------------	--------------------------	-------------

제9조(종합판정)

- (1) 심사결정의 종합판정은 심사위원의 세부 심사항목 평가에 해당하는 심사항목 평가점수와 최종결정 (final decision)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한다.
- (2) 심사의 종합판정은 심사위원 2인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다음 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심사위원		심사결정	심사단계 진행	
A	B			
①	①	게재가능	편집위원/편집위원장 논의를 통해 수정범위 결정 후,	저자에게 최종 원고 보완 요청
	②	수정 후 게재	심사위원 수정/보완 요청내용 전달	저자에게 심사원고 수정보완 요청
	③			
	④	수정 후 재심	심사위원 수정/보강 요청내용 전달	저자에게 심사원고 수정보강 후, 재투고 단계 진행
②	②	수정 후 게재	심사위원 수정/보완 요청내용 전달	저자에게 심사원고 수정보완 요청
	③			
	④	수정 후 재심	심사위원 수정/보강 요청내용 전달	저자에게 심사원고 수정보강 후, 재투고 단계 진행
③	③	수정 후 재심	심사위원 수정/보강 요청내용 전달	저자에게 심사원고 수정보강 후, 재투고 단계 진행
	④	게재거절	게재거절 통보	
④	④	게재거절	게재거절 통보	

예비 적격성 심사 판정

①	①	예비 적격성 부합	2명 심사위원(편집위원) 배정 후, 적격성 판정	심사위원 추천 및 배정 요청 후, 1차 심사단계 진행
	②			
	③			
	④			
②	②	예비 적격성 부합	2명의 심사위원(편집위원) 부적합 사유 및 판정결과 논의 후 최종결정	예비 적격성 부적합으로 심사종료
	③	예비 적격성 부합		
	④	예비 적격성 부적합		
③	④	예비 적격성 부적합		
④	④	예비 적격성 부적합		

주, A, B는 각각 제 1심사위원, 제 2심사위원

제10조(심사결과 운영지침)

(1) 「제 3심사위원」의 선정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반하여 선정한다.

- 1) 1차 이상의 심사에서, 심사위원 1인의 평가가 「④ 게재거절」이며 다른 심사위원 1인의 평가가 「③ 수정 후 재심」 이상인 경우
- 2) 1차 심사기간 만료일 후 독촉연락을 2회 이상 행한 이후에도 심사자의 명시적 응답이 없거나, 심사자로부터 심사거절 통보를 받은 경우

- 3) 최종 결과는 심사위원 3인의 의견 중 다수(2인) 의견에 따라, 게재여부를 확정한다.
- (2) 심사종료 및 게재거절
 - 1) 편집위원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투고자의 경우에, 해당 논문을 “심사종료” 하거나 “게재거절”로 결정할 수 있다. 이때에는 투고자가 암묵적으로 심사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본다.
 1. 수정요청이 투고자에게 도달한 후 수정완료일 익일부터 3개월까지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단, 저자가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2. 편집위원의 최초 독촉연락이 도달한 익일부터 60일까지 투고자의 명시적인 응답이 없는 경우
 3. 편집위원회가 독촉연락을 최소 30일을 주기로 2회 이상 행한 이후에도 투고자의 명시적인 응답이 없는 경우
 - 2) 투고 저자의 응답 여부기준은 온라인 시스템 상에 초기 요청통보(시스템의 e-mail 발송)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3) 심사자 간 의견불일치 논문의 처리원칙
 - 1) 동일한 사안에 대해 두 심사위원의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이 이를 조정한다.
 - 2) 논문투고자와 심사위원의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이를 조정하거나 제 3심사자를 선정할 수 있다.
 - 3)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 심사위원과 협의하여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 (4) 이의신청
 - 1)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수정요구 및 재심 판정에 대해 반론이나 상이한 견해를 밝히고자 하는 경우에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 E-mail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이의에 대한 논거나 실증적인 반론사례를 제시하여야 한다.
 - 2) 이의신청 심사는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최종 결정하여 이의를 제기한 투고자에게 서면으로 회의 결과내용을 전달한다.
- (5) 투고 논문이 논문작성 규정에 위배될 경우, 추후에 편집위원회에서 연구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6) 편집위원장이 논문 제출 시, 편집위원, 편집간사 중 최연장자 순으로 편집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부칙 <2018.7.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제정되어 시행한다.

부칙 <2019.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의 개정은 연구소 운영위원회 및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의하며, 발령한 날로부터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시행한다.